

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『1차연장』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2일
특허청장

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- (연장 개요)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분	연장 기간	해당 대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관련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665호) 제33조 제2항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(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) 제13조
- 「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」(특허청고시 제2024-16호) 제11조의2

- 금회 공고 건은 '1차 연장' 사항에만 해당

2 신청 대상 및 추진 절차(1차연장)

- (대상)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을 보유한 기업
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5. 3. 24.

- 추진 절차

-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(한국발명진흥회) → ② 특허청 확인 →
-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(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) 심의 → ④ 최종 연장 승인 (25년 3월 내(예정))

③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(1차연장)

□ 연장신청 대상

- 아래의 '가'항 부터 '라'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- 가.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- 나.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
- 다.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
- 라.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구분	항목	세부사항
가	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
나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
다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한 건에 한함
라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○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

□ 연장신청 제외 대상

-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
- 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- 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- 다.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- 라. **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**

구분	항목	세부내역
가	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
나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실시권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
다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라	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제품 지정제품(물품식별번호)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4 신청 서류(1차연장)

○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번호	구분		필수여부	비고	
1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	필수	붙임1	
2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	필수	붙임2	
3	신청자격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 ^{비고1}	납품실적목록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	해당 시	붙임3
		3-2 ^{비고2}	구매계약서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	해당 시	-
		3-3 ^{비고3}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해당 시	-
		3-4 ^{비고4}	구매확약서	해당 시	붙임4
4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	필수	-	

비고1)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·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

비고2)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

비고3)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

비고4)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

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안내(1차연장)

□ 신청기간 : '25. 01. 22.(수) ~ '25. 02. 12.(수) 18:00 정각까지

※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.

□ 신청방법

○ 제출처 : 이메일 신청(fast@kipa.org)

○ 신청서류 제출방법

- 4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기한 내 e-메일로 제출

□ 문의처

○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최경주 연구원

☎: 02-3459-2807, E-mail: fast@kipa.org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혁신제품 지정기간 (1차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	
회사개요	회사명			법인번호		
	주 소	(□ -)				
	행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
		전화번호			FAX번호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해당여부	
	1	지정기간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()	
	2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()	
	3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		()	
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-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			()		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해당여부	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		()	
	2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		()	
3	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우수조달제품(조달청)으로 지정된 경우 (물품식별번호 기준)			()	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5. . .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 (인)

특허청장 귀 하

[붙임3] 납품실적목록

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납품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

주) **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**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**물품 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**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(단,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)

